
1. 재판매(再販賣)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
2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·구매하는 경우
3. 「양곡관리법」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축산법」에 따른 농·수·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
4.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

**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
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**

[시행 2015.12.18] [기획재정부고시 제2015-26호, 2015.12.18, 폐지제정]

기획재정부(계약제도과), 044-215-5211

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○ 공사: 82억원